

[변경 대비 표]

■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

판	드	명	BNK튼튼중기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변	경	서	류	집합투자규약	
변	경	사	유	<전면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 클래스 신설 등	
효	력	발	생	일	2024년 03월 07일

■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문구 조정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 (생략)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u>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 를 말한다. 5. ~ 10. (생략)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u>법 제229조제1호의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 를 말한다. 5. ~ 10. (현행과 동일)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클래스 신설	① ~ 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략) <신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현행과 동일) 10. <u>Class C-Pe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u> 11. <u>Class C-P2e 수익증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u>

<p>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생략)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행과 동일)</p>
<p>제9조(수익권의 분할)</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생략)</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u>수종의</u>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 ② (현행과 동일)</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 클래스 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u>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로</u>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u> 하여야 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동일) <u>10. Class C-Pe 수익증권</u> <u>11. Class C-P2e 수익증권</u>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u>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 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1. (현행과 동일)</p> <p><u>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삭제></u></p> <p><u>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현행과 동일)</p>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정	<p>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u></p> <p>③ <u>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u></p>	<u><조항 삭제></u>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정	<p>① <u>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u></p>	<u><조항 삭제></u>

		<p>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정	<p>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제14조(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정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p>	<p>제14조(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p>

		<p>탁계약서 ·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u>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u></p> <p>2. <u>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u></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은</u>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u>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u></p> <p>⑧ (생략)</p>	<p>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u>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u></p> <p>2. <u>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u></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u>종류 및</u>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⑧ (현행과 동일)</p>
제15조(자산운용지시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u>한도로 하여</u> 그 이</p>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u>생략</u>)--- 운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u>생략</u>)--- 운용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동일) 3.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한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문구 수정	다음 각호의 ---(<u>생략</u>)---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u>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 4. ~ 5. (생략)	다음 각호의 ---(<u>생략</u>)---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u>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 4. ~ 5. (현행과 동일)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u>제3영업일</u>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u>3영업일</u>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① (생략) ② <u>투자자</u> 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u>고객</u> 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제25조(판매가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문구 수정	① 수익증권은 <u>다음 각호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2. Class A-e 수익증권 :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u>온라인 전용</u>	① 수익증권은 <u>제 3 조제 3 항 각호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u>1. ~ 9. <삭제></u>

		<p>3. <u>Class C 수익증권 : 제한 없음</u></p> <p>4. <u>Class C-e 수익증권 : 온라인 전용</u></p> <p>5. <u>Class C-f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u></p> <p>6. <u>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u></p> <p>7. <u>Class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8. <u>Class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u></p> <p>9. <u>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p> <p>② (생략)</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p>
--	--	---	--

		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p>① ~ ④ (생략)</p> <p>⑤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⑥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3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⑧ 판매회사는 <u>제6항</u>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⑨ (생략)</p> <p>⑩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① ~ ④ (현행과 동일)</p> <p><u><삭제></u></p> <p><u><삭제></u></p> <p>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3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⑧ 판매회사는 <u>제7항</u>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⑨ (현행과 동일)</p> <p><u><삭제></u></p>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조항 신설	<조항 신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u>

			<u>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7조(환매가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u>날부터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u>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대차대조표</u>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재무상태표</u> 2. ~ 3.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문구 조정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u>기준가격</u> 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생략)	분배금 지급일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u> 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 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① ~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u>지체없이</u>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삭제>
제39조(보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클래스 신설 - 판매보수 변경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생략)---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8. (생략) 9. Class S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다. ~ 라. (현행과 동일)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생략)---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8. (현행과 동일) 9. Class S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8 다. ~ 라. (현행과 동일) <u>10. Class C-P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2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u><신설></u>	<u>의 1.2</u>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u> <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u> <u>11. Class C-P2e 수익증권</u> <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2</u>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u>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u> <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u>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① ~ ③ (생략)</u> <u><신설></u>	<u>① ~ ③ (현행과 동일)</u> <u>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u> <u>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u> <u>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u> <u>3. 제 2 항 및 제 3 항의 사유에 따라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 <u>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u>
		<u><신설></u>	

		<p align="center"><u><신설></u></p>	<p>1. <u>대상금액: 제 39 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u> <u>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u> <u>비용(법률자문료 등)</u></p> <p>2. <u>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 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u></p> <p>⑥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 항 적용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투자신탁을 ---(<u>생략</u>)---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u>생략</u>)</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투자신탁을 ---(<u>생략</u>)---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u>생략</u>)</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p>	<p>① 투자신탁을 ---(<u>생략</u>)---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u>현행과 동일</u>)</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투자신탁을 ---(<u>생략</u>)---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u>현행과 동일</u>)</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p>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문구 수정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u>법 시행령 제225조의2</u>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u>소각</u> 2.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현행과 동일)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동일) <u>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u>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략)	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단기대출은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과 동일)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⑥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문구조정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lass C-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lass C-P 및 Class C-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	-	<신설>	<u>(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24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u>
-------	---	------	--

끝.